

취학전 홍역예방접종으로 홍역을 퇴치합시다!

■ 홍역이 주기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.

- 2000-2001년동안 약 5만명이상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였으며, 대부분이 만 4-6세 2차 홍역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초등학생이었고, 폐렴이나 뇌염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. 이러한 유행은 홍역 예방접종률이 낮을 경우 주기적으로 유행하게 되어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4-6년 간격으로 유행하여 왔습니다. 이에 정부는 2001년부터 국가홍역퇴치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홍역 유행을 예방하고 퇴치수준을 관리·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업 수행이 필요합니다.

■ 홍역은 예방이 가능합니다.

- 홍역은 2회 예방접종(만12-15개월, 만4-6세)으로 예방이 가능하며, 홍역·유행성이하선염·풍진(MMR) 혼합백신을 접종할 경우 홍역은 물론 유행성이하선염(볼거리)과 풍진도 함께 예방할 수 있습니다.
- 그러나 만4-6세 2차 홍역 예방접종률이 낮을 경우 홍역의 재유행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■ 초등학교 입학전에 2차 홍역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.

- 홍역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이가 환자와 접촉하는 경우 95% 이상이 홍역에 걸리는 전염성이 강한 질환입니다.
- 아이들을 홍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학 전에 반드시 모든 아이의 홍역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접종하지 않은 경우는 접종을 해야 합니다.
- 정부는 홍역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. 학부모의 기억에 의한 예방접종 확인은 부정확하기 때문에 접종기관이 확인한 <2차 홍역 예방접종증명서>를 학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홍역예방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반드시 의사에게 2차 홍역 예방접종을 확인하시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기록이 불확실하여 접종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학 전 접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질병관리본부는 2002년부터 개인별 예방접종기록에 한하여 '예방접종등록사업'을 추진·운영하고 있으며, 전산등록된 자녀의 예방접종기록에 한하여 예방접종도우미홈페이지(<http://nip.cdc.go.kr>)에서 조회 및 접종증명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단, 접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수령하셔야 합니다.

“초등학교 입학전 2차 홍역예방접종으로 건강한 학교생활을 시작합시다.”

자녀의 방접종력 확인시 유의사항

■ 만4~6세 2차 홍역 예방접종을 이미 받은 경우

- 접종을 받았던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기록 확인을 통해서 <2차 홍역 예방접종증명서>를 발급받아 입학시 학교에 제출합니다.
- 미리 발급받은 접종증명서가 있다면 <2차 홍역 예방접종증명서>의 첨부여부란을 체크(√)하시고 증명서를 첨부하여 입학시 제출합니다.
- 또한 <모자보건수첩(아기수첩)>에 (책임)의사의 서명과 함께 기록된 예방접종기록 내역이 있으면 <2차 홍역 예방접종증명서>의 첨부여부란을 체크(√)하시고 복사첨부하여 입학시 제출합니다.

♣ 접종기관이 원거리에 위치하여 방문이 곤란할 경우

- 보건소에서 접종을 받았던 경우에는 '현 거주지'의 보건소를 방문하여 접종기관의 기록 확인을 요청하고 <2차 홍역 예방접종증명서>를 발급 받습니다.
-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았던 경우에는 '근처 의료기관' 또는 '단골 의료기관'을 방문하여 접종기관의 기록 확인을 요청하고 <2차 홍역 예방접종증명서>를 발급 받습니다.

♣ 접종기관이 폐업을 한 경우에는 접종기관 소재지 보건소에서 확인을 받도록 하며, 접종기관 소재지 보건소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방문이 곤란할 경우에는 거주지 보건소에 확인을 요청합니다.

※ 접종기관 방문시 <2차 홍역 예방접종 통지서> 및 <2차 홍역 예방접종증명서>(양면서식)와 함께 <모자보건수첩(아기수첩)>과 <건강보험카드>를 지참하십시오.

■ 만4~6세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접종기록이 없는 경우

-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을 받으신 후에 <2차 홍역 예방접종증명서>를 발급 받으시고 입학시 학교에 제출합니다.
- 예방접종 금기로 인하여 접종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접종기관에서 접종제외대상 사유를 <2차 홍역 예방접종증명서>에 확인 받아 제출합니다.